

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.

<!--StartFragment--> <P class=HStyle0>정부방침아래 교통부 장관이 토지수용법 제3조 소정의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기업자가 되어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한 수용재결을 적법 유효한 것이다.</P> <P class=HStyle0>(대법원 1971.10.22. 선고 71다1716 판결)</P>